

【별표 1】 채용 결격사유

『공무직직원관리내규 제5조(결격사유)』

제5조(고용 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.

1. 인사규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
2. 근로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
3. 부조리 등 징계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자

『인사규정 제12조(결격사유)』

제12조(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6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